

CCTV 영상정보 내부관리계획

1. 목적

이 지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2. 책임자의 지정

- 1) 은혜의집 원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CCTV 운영담당자를 지정하되, 이 경우 사무국장이 책임관이 된다.
- 2) 제1항에 따른 책임관은 당해 기관의 CCTV 설치와 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총괄책임자 : 원장
 - 운영담당자 : 사무국장
 - 모니터링담당자 : 사무국장과 원장이 지정한 자

3. 적용범위

안전사고, 노인학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의 시설안전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기본방침

은혜의집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5. CCTV 설치

- 1) 은혜의집 CCTV는 총 59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공동거실 2대, 작업치료실 1대, 프로그램실 2대, 침실 29대
 2. 복도 6대, 식당 4대, 엘리베이터 2대
 3. 현관 7대, 기타 6대
- 2)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사무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6. 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은혜의집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 1)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사무실에 있는 DVR
-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사무실
-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7. 화상정보의 보호원칙

- 1)원장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화상정보를 수집 하여야 한다.
- 2)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수집된 화상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3)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 하여야 한다.

8. 무단유출 금지

관리자는 CCTV로 취득한 영상정보를 무단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의 사생활에 침해되는 영상정보를 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9. 비밀유지 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영상정보의 보관

- 1)녹화방법 및 시간은 24시간 녹화를 원칙으로 한다.
- 2)수집된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지난 영상정보는 자동폐기(삭제)될 수 있도록 기기를 운영한다.
- 3)사건, 사고 등으로 기록보존지시 등의 특별한 조치를 위한 영상정보는 관련 법규에 따르며 컴퓨터, 외장하드, USB 등 보조기록 장치에 보관하는 경우는 보관사유의 소멸 시 즉시 삭제한다.

11. 보호조치 등

- 1)영상정보의 보관은 기기 하드디스크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 2)안전사고와 노인학대 등의 예방적 차원으로 설치된 CCTV로 영상정보의 보관 장치는 은혜의집 사무실에 두며, 정해진 절차에 의해 이동식 저장장치에 복사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책임 하에 사무실에 보관한다.
- 3)화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책임 하에 사무실에 보관한다.
- 4)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2. 화상정보 처리 제한 (열람가능사유)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일체 열람 및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1)정보주체에 동의가 있는 경우
- 2)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3)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4)신문, 방송을 통한 언론 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5)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 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6)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7)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3. 영상정보의 제공범위

영상정보 제공 시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및 녹화범위로 제한한다.

14. CCTV 사용 제한 (운영자의 금지행위)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15. 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열람요청시 제출서류)

- 1)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CCTV 열람요청서를 작성하여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원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 2)원장은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열람결정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 3)원장은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도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 4)원장은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도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5)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6)원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16.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1)위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원장에게 별도 서식에 따라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원장은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도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도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17. CCTV 설치 운영시 안내판 및 안내문구 설치

CCTV를 설치·운영할 때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210mm×297mm) 및 안내문구를 외부와 연결된 현관에 설치한다.

18. 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19. 장비관리

- 1) 운영담당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도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2) 운영담당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0. 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인정보 보호법」,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통신비밀보호법」, 「행정절차법」 등을 준용한다.